변경전	변경후
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)①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,000,000주로 한다.	제5조(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및각종주식의내용과수)①본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1,000,000,000주로한다.
제8조의 2 (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⑥ 상환에 관한 사항 1. 상환청구기간 : 제1종 종류주주는 발행일 후 7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.	**제8조의 2 (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** ⑥ 상환에 관한 사항 1. 상환청구기간 : 제1종 종류주주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상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. **제8조의 3 (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**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배당우선주식(이하 “제2종 종류주식” 이라 함)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100,000,000주를 한도로 한다. ② 제2종 종류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 재산분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,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. ③ 제2종 종류주의 존속기간(이하 “존속기간” 이라 한다)은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. 다만, 존속기간 중에 우선주인수계약서상의 배당을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하며,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 및 우선주인수계약서상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한다. ④ 배당에 관한 사항 1. 제2종 종류주는 참가적, 누적적 우선주로 제2종 종류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발행가액 기준 최저 연 2%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“우선주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. 2.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제2종 종류주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의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. ⑤ 전환에 관한 사항 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(전환비율)는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분할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 2. 제2종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2종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.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⑥ 상환에 관한 사항 1. 제2종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, 기타
<신설>	

	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종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, 상환일 이전에 중도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,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2. 제2종 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단,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.. 3.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제2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때 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잔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안분비율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율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 ⑦ 제2종 종류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,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. ⑧ 청산등 1. 회사가 청산되거나 정리되는 경우 제2종 종류주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 제2종 종류주주는 회사가 처분하고자 하는 중요자산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2종 종류주주에 매매대금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매매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. 제2종 종류주주가 위 중요자산을 매수하지 않아 “회사가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경우, 그 매도가격은 회사가 제2종 종류주주에 서면으로 제시한 매매대금 이상이어야 한다. 2. 청산 및 정리라고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)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) 회사의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의 양도나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